

# 2018년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



## □ 평가개요

- (근 거)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12조 제6호(부패방지시책 실태조사·평가)
- (목 적) 부패취약분야 정책개발 및 각 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 유도
- (기 간) '17.11월 ~ '18.10월 ☞ 실적제출('18.11.6) / 결과통보('19.1.31)

중앙행정기관		지방자치단체		교육 자치단체	국공립 대학	공공 의료기관	공직유관단체					계
		광역시	기초				I	II	III	IV	V	
24	14	16	37	14	12	12	19	33	28	30	31	270

※ 공단은 전체 5개 공직유관단체 중 Ⅲ유형(500명 이상 1,000명 미만, 총 28개 기관)에 해당

## □ 평가체계 \* 계획, 실행, 성과·확산 부문 40개 소지표 평가

부문	평가 영역 (가중치)	단위 과제(가중치)
A. 계획	1.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(0.15)	1-1.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(0.70) 1-2.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(0.30)
B. 실행	1. 청렴생태계 조성 (0.20)	1-1. 청렴정책 참여 확대(0.50) 1-2. 청렴 거버넌스 운영(0.50)
	2. 부패위험 제거 개선 (0.20)	2-1. 부패취약분야 개선(0.45) 2-2.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(0.30) 2-3. 부패행위 처벌·관리 강화(0.25)
	3. 청렴문화 정착 (0.25)	3-1. 청렴교육 내실화(0.60) 3-2.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·부패신고 활성화(0.40)
C. 성과·확산	1. 청렴개선 효과 (0.05)	1-1. 청렴도 개선 실적(0.70) 1-2. 청렴도 측정 등 결과 공개(0.30)
	2.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(0.15)	2-1. 기관 간 반부패 협력 활동(0.40) 2-2. 반부패 시책 개발·운영(0.60)
감점 (최대 10점)		1. 부패사건 외부적발 (최대 5점) 2.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(최대 5점)

## □ 평가결과
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
부패방지 시책평가 (등급)	2등급	3등급	<b>1등급</b>